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변경 /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7호(2009.09.24.)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8-98호(2018.09.20.),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0-105호(2020.09.03.),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3-58(2023.06.29.)로 정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월계동 436번지 일대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정비사업의 명칭: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43,886.0	감) 575.6	43,310.4	공동주택 재건축

※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886.0	감) 575.6	43,310.4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4,784.0	감) 15.3	4,768.7	11.0	
	도 로	1,571.0	증) 17.7	1,588.7	3.7	
	어린이공원	3,213.0	감) 33.0	3,180.0	7.3	
획지	소 계	39,102.0	감) 560.3	38,541.7	89.0	
	획 지	39,102.0	감) 560.3	38,541.7	89.0	

※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4.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3,886.0	감) 575.6	43,310.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3,886.0	감) 575.6	43,310.4	100.0	

※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5.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①	15	집산 도로	251	월계동 472-49번지	월계동 439-1번지	일 반 도로	-	82.04.12 (서울시고시 제143호)	
기정	소로	2	①	9~18 (12)	국지 도로	357 (127)	월계동 73-6번지	월계동 479-26번지	일 반 도로	-	79.06.27 (서울시고시 제283호)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임.

나.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월계동 483번지 일원	3,213.0	감) 33.0	3,180.0	

※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계획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월계동 436번지 일대	84.19	증) 44.72	128.91	
	경로당		378.10	증) 0.87	378.97	
	어린이집		583.53	증) 100.00	683.53	
	작은도서관		331.78	감) 123.81	207.97	
	주민운동시설		1,290.03	감) 201.25	1,088.78	
	어린이놀이터		1,250.38	감) 0.38	1,250.00	
	노인복지시설		-	증) 580.0	580.0	고령화서비스시설 (개방시설)
	주민공동시설		-	증) 1,787.18	1,787.18	주민휴게시설, 공용세탁실, 독서실, 주민교육시설
	공동작업장		64.03	감) 64.03	-	
합 계			3,982.04	증) 2,123.3	6,105.34	

※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월계동신아파트	43,886.0	획지	39,102.0	9	-	-	9	-	
변경	주택재건축정비구역	43,310.4		38,541.7						

※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8. 건축시설계획(변경)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층수											
	명칭	면적 (㎡)	명 칭	면적 (㎡)				정비 계획	법적 상한												
기 정	월계동신 아파트	43,886	획 지	39,102	월계동 436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7.82 이하	230.65	249.83 이하	최고 25층 이하											
변 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3,310.4		38,541.7			18.43 이하	249.83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기정																		
			• 주택공급계획: 1,070세대 • 전체 건립규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세대수</th></tr><tr><th>세대(임대)</th><th>비율(%)</th></tr><tr><td>계</td><td>1,070(66)</td><td>100.0</td></tr><tr><td>60㎡ 이하</td><td>659(66)</td><td>61.6</td></tr><tr><td>60~85㎡ 이하</td><td>411</td><td>38.4</td></tr></table> ※ ()는 재건축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임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100.0% (연면적의 100.0%)								구분	세대수		세대(임대)	비율(%)	계	1,070(66)	100.0	60㎡ 이하	659(66)	61.6
구분	세대수																				
	세대(임대)	비율(%)																			
계	1,070(66)	100.0																			
60㎡ 이하	659(66)	61.6																			
60~85㎡ 이하	411	38.4																			
			변경																		
			• 주택공급계획: 1,060세대 • 전체 건립규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세대수</th></tr><tr><th>세대(임대)</th><th>비율(%)</th></tr><tr><td>계</td><td>1,060(-)</td><td>100.0</td></tr><tr><td>60㎡ 이하</td><td>650(-)</td><td>61.3</td></tr><tr><td>60~85㎡ 이하</td><td>410</td><td>38.7</td></tr></table>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100.0% (연면적의 100.0%)								구분	세대수		세대(임대)	비율(%)	계	1,060(-)	100.0	60㎡ 이하	650(-)	61.3
구분	세대수																				
	세대(임대)	비율(%)																			
계	1,060(-)	100.0																			
60㎡ 이하	650(-)	61.3																			
60~85㎡ 이하	410	38.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경우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용적률 계획(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43,886㎡	39,102㎡		4,784㎡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4,784㎡(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없음)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199%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비고
		우수디자인		15%		최대 20% 이내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등급	6%이상 12%이하	최 대 15 % 이 하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4%이상 8%이하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등급	4%이상 8%이하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2%이상 4%이하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이상	15%이하		
		지능형 건축물	•1등급	15%		
			•2등급	12%		
			•3등급	9%		
			•4등급	6%		
		역사문화 보전	•지정 및 등록 문화재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총 9% 적용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99% × (1 + 1.3 × 0.12234) = 230.65%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784㎡ / 39,102㎡ = 0.12234						
법적상한 용적률		249.83%				

■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43,310.4㎡	38,541.7㎡		4,768.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4,768.7㎡(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없음)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사업성 보정계수) = 190% + (13.547% × 2.0) = 217.094%			
		구분		인센티브	
		환경친화 안전한 주거지 조성	친환경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3.000%	최대 20% 이내
		보행중심 생활공간조성	공공보행통로	4.182%	
		세대맞춤형 생활환경개선	층간소음해소	3.000%	
			고령서비스시설(노인복지시설)	3.365%	
	합계		13.547%		
	※ 공공보행통로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시 인센티브 적용				
	※ 고령서비스시설은 개방시설로 운영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적률 = (공시지가 보정계수 ^{주1)} + 대지면적 보정계수 + 세대밀도 보정계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0 + 0 + 0 = 2.0) × 13.547% = 27.094%					
주1)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 7,274,646원/㎡ ÷ 3,229,000원/㎡ = 2.25 → 2.0적용 - 사업시행계획인가(2021.06.17.) 직전년도인 2020년도 공시지가 적용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보정계수적용 전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β(건축물)) = 217.094% + 203.547% × (1.3 × 1 × 0.1237) = 249.83%				
α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768.7 / 38,541.7 = 0.1237 가중치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 용적률 = 210%/210% = 1.0					
법적상한 용적률		249.83%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기정>

계획 기준		- 소형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소형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249.83%				
상한용적률		230.65%				
소형 주택 의무 면적	용적률 증가분	$249.83\% - 230.65\% = 19.18\%$				
	증가된 용적률의 50%	$19.18\% \times 0.5 = 9.59\%$ $39,102 \text{ m}^2(\text{대지면적}) \times 9.59\% = 3,749.88 \text{ m}^2$				
	의무 연면적	3,749.88 m ² 이상				
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33.98 m ²	49.62 m ²	41	2,034.42 m ²	획지
		45.94 m ²	64.99 m ²	20	1,299.80 m ²	
		59.95 m ²	83.54 m ²	5	417.70 m ²	
		합 계		66	3,751.92 m ²	> 3,749.88 m ²

<변경>

계획 기준		- 소형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소형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249.83%				
상한용적률		249.83%				
소형 주택 의무 면적	용적률 증가분	$249.83\% - 249.83\% = 0.00\%$				
	증가된 용적률의 50%	$0.00\% \times 0.5 = 0.00\%$ $38,541.7 \text{ m}^2(\text{대지면적}) \times 0.00\% = 0.00 \text{ m}^2$				
	의무 연면적	-				
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	-	-	-	-
		합 계		-	-	-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변경없음)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녹지공간의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전면투수포장을 적용하여 생태면적률 37.35%로 계획 • 환경친화적인 조경계획 수립 - 기온·토성·수분 및 기상변화 등에 적응성의 폭이 넓은 수종 선정	
재난방지 (변경없음)	• 토사유출 방지 - 절·성토 및 굴착으로 인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이며, 가능한 건기에 공사를 실시하고 1일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사토 발생을 최소화 함 - 토목공사 완료 즉시 나대지를 안정화시키며, 조경식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1.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37.35%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자연지반투수포장 등 적용	
	2. 녹지네트워크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확보로 연결성 확보	•녹지계획에 반영	
	3.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절성토 비율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 30%미만	○	•지형변동비율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 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 유지	
	4. 비오톱	3등급	○	•비오톱 유형 평가 1,5등급, 개별 비오톱 평가제외, 2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생활 환경	5.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Sunlight를 이용하여 일조시간 및 일영범위 측정	•9시~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일조가 가능하도록 배치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한강을 따라 바람길 형성	•바람길 확보를 위한 건물 배치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과다한 에너지 사용 발생 없음	•에너지절약형 설비 기기 도입	
	7.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	•신·재생에너지 설계	•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8. 경관	Skyline보전	○	•배후의 능선 보호 필요	•건물배치, 높이설정 에 반영	
		조망권 확보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건물배치, 높이설정 에 반영	
		가로녹시율 35%	○	•도로 및 보행자도로 의 녹시율 확보	•가로수 식재 등 적용	
		입면차폐도 35m 이하	○	•주요 간선도로변에 입지	•인동간격 최대확보, 건물 엇배치로 입면 차폐도 최소화	
	9. 휴식 및 여가 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공공공지, 어린이 놀이터 등에 연결 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 계획수립	○	•차 없는 외부공간 조 성을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검토	•보행전용도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산책로 포함)	
		자전거전용 도로 계획수립	×	•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보관소: 15대/100세대 이상	•각 동별 자전거보 관소 계획	
추가	11. 대기질	비산먼지 발생억제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량 운용 및 방진망 설치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추가	12. 수질	오수 발생 저감	○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 •운영시 오수발생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중량하수처리장 연계처리	
	13. 토양	토양오염 저감	○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공사시 토양오염물질 발생	•토양오염 전문처리 업체 위탁처리 •폐유 보관소 설치	
	14. 친환경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건설폐기물 해체·분리후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노원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15. 소음·진동	소음·진동 기준	○	•공사시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주변가로 교통에 의한 소음발생	•가 설 방 음 판 널 (7-10m)설치 •방음벽(5m)설치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정비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864	1,070	206	소형 주택 66세대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정비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864	1,060	196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소음·진동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규정 시행규칙」의 소음 및 진동기준에 적합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	
비산먼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저감대책 마련	
교통안전	•정비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교통계획 수립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통행을 자제하도록 함 -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차도와 인도 사이의 방호울타리 설치로 학생들의 보행안정성 확보	
일조량	•대상지는 선곡초등학교와 인접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본 정비사업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의 소지는 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	•단지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출입구 주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등 환경설계를 통한 자연감시 시스템(휴먼 시큐리티)을 구축 •시선의 사각지대는 CCTV 설치를 통한 자연감시 기능 보완 •산책로 및 보행가로 변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43,886.0	감) 575.6	43,310.4	공동주택 재건축

※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3,886.0	감) 575.6	43,310.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3,886.0	감) 575.6	43,310.4	100.0	

※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기반시설 결정 조서(변경)

1)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①	15	집산 도로	251	월계동 472-49번지	월계동 439-1번지	일반 도로	-	82.04.12 (서울시고시 제 143호)	
기정	소로	2	①	9~18 (12)	국지 도로	357 (127)	월계동 73-6번지	월계동 479-26번지	일반 도로	-	79.06.27 (서울시고시 제 283호)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임.

2)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월계동 483번지 일원	3,213.0	감) 33.0	3,180.0	

※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및 선형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소계	43,886.0	감) 575.6	43,310.4	100.0	공동주택
	획지	43,886.0	감) 575.6	43,310.4	100.0	

※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가구	용도	비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사업부지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가) 건폐율 계획(변경)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획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7.82% 이하	-
변경			18.43% 이하	

나)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 용적률	법적 상한용적률		
기정	190% 이하	199% 이하	230.65% 이하	249.83% 이하	정비 계획	허용용적률 199%
						상한용적률 230.65%
						법적상한용적률 249.83%
변경		217.09% 이하	249.83% 이하			허용용적률 217.09%
						상한용적률 249.83%
						법적상한용적률 249.83%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	비고
기정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총 9%
변경	친환경건축물(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공공보행통로, 층간소음, 고령서비스시설	총 13.547%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기정	31.65	19.18	총 50.83%
변경	32.11	-	총 32.11%

다) 높이계획(변경없음)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 25층이하	-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경우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III. 관련도면: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5.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6.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생략

V.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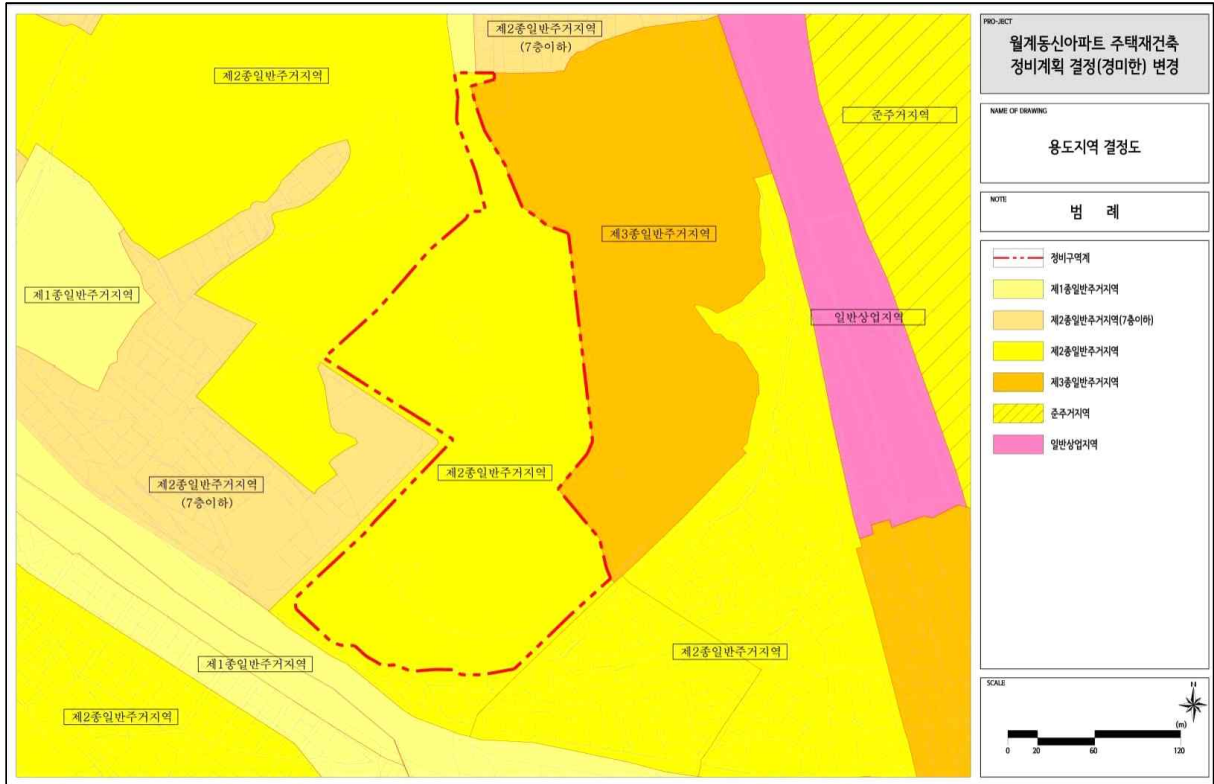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노원구 재건축사업과(☎02-2116-3907)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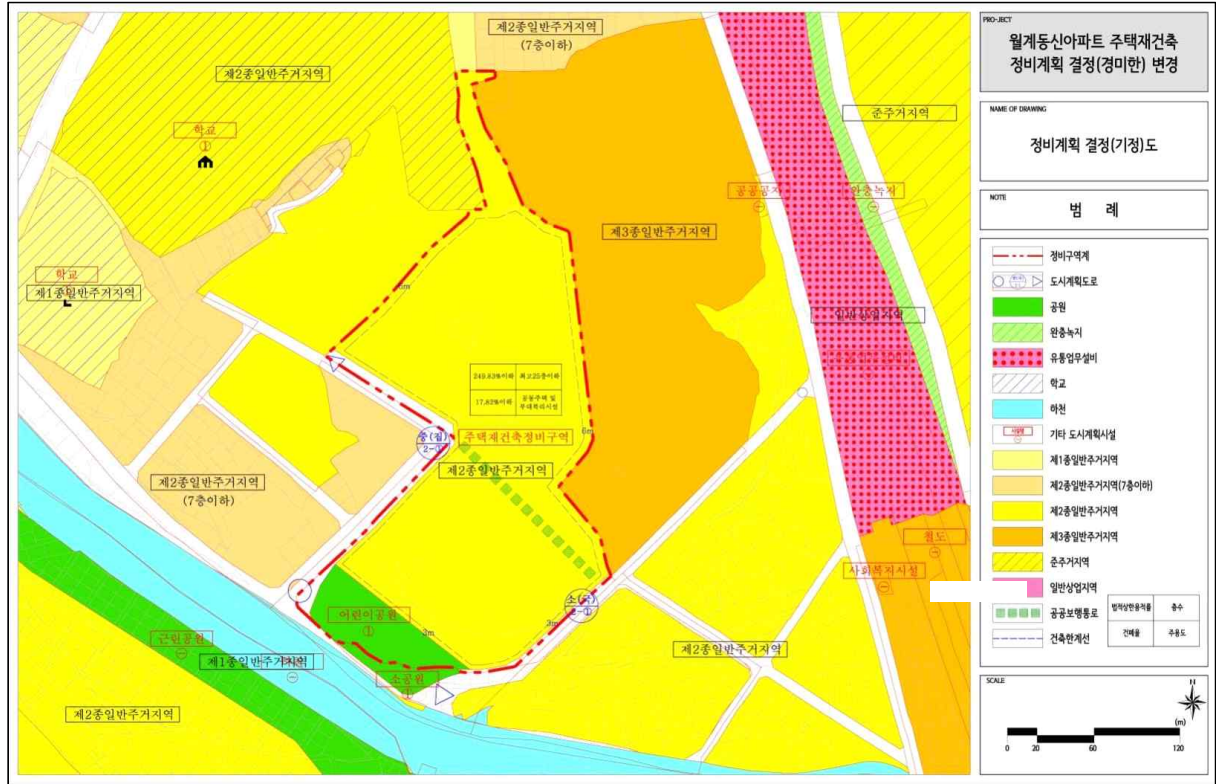
3.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5.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6.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